

제227회 영등포구의회  
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  
**檢 討 報 告 書**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12. 7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『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81호로 202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출연금 및 산출내역

- 출연금액: 19,951천원
- 산출기초: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53,464,296천원의  
1만분의 1.3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관련규정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및  
제152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시행령 제94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## 5. 검토의견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
○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서,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규정에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임.

-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은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서 1만분의 1.2로 하향하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21.1.1. 시행예정이나 연차적 하향조정을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2021년에는 1만분의 1.3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음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 지방세기본법

-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**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
-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3

###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(2021.1.1. 시행)

**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**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~ 5. 생략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